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정 2009.03.01

3차 개정 2024.05.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 학칙 제31조의2에 의거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정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 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단, 학과의 수업운영상 조기졸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신청자격)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학기초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학기 취득예정학점을 가산하여 학칙 제24조제2항의 졸업학점을 충족한 자
<개정 2019.2.1. 2024.5.13.>
2. 조기졸업 신청시 전체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개정 2024.5.13.>
3.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5조(대상자 선정)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제4조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서 졸업학기 초에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격상실) 조기졸업 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칙 제44조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조기졸업 신청후 휴학한 학생
3. 조기졸업을 포기한 학생

제7조(조기졸업 사정시기) 조기졸업 대상자의 졸업사정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해당학기의 졸업사정기간에 실시한다.

제8조(학위 미취득) ① 조기졸업 신청자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2학년 2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하의 경우에는 잔여학기 등록금은 교무규정 제14조(미달학점등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졸업학점을 취득하고도 조기졸업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잔여학기에는 최저 2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

제9조(학적부기재) 조기졸업자는 학적부에 “조기졸업” 이라고 기재한다.

제10조(기타사항) 조기졸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